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
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(국가보훈처 소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참전유공자에게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하고,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

(안 제6조 조문제목 개정, 제2항 신설)

- 참전유공자에게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함(안 제6조제1항)
-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진위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·운영, 재발급, 발급대상자 본인 확인 및 반납 등 관리 근거에 관하여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01조의2부터 제101조의4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.(안 제6조제2항 신설)

나. 의료지원(안 제9조)

참전유공자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진료비용을 감면받으려는 경우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도록 함.

다. 고궁 등의 이용지원(안 제12조)

참전유공자가 고궁 등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,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하도록 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3년 국가보훈등록증 공카드 30만장 구입예산 15억원
편성확보(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7개 보훈관계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보훈등록증 발급대상자 포함)

다. 합 의 : 관계기관 협의 이전임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국가유공자증의 발급 등)”을 “(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국가유공자증(이하 “국가유공자증”)”을 “국가보훈등록증(이하 “국가보훈등록증”)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발급되는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·재발급 및 진위 확인, 발급대상자 본인 확인, 국가보훈등록증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01조의2부터 제101조의4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국가유공자증”을 “국가보훈등록증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국가유공자증”을 “국가보훈등록증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3년 4월 1일부터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조(국가유공자증의 발급 등)	제6조(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) ① ----
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에게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1조제1항에 따른 <u>국가유공자증</u> (이하 “ <u>국가유공자증</u> ”이라 한다)을 발급한다.	----- ----- ----- ----- <u>국가보훈등록증</u> (이하 “ <u>국가보훈등록증</u> ”----- -----.
<신설>	② 제1항에 따라 발급되는 <u>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·재발급 및 진위 확인, 발급대상자 본인 확인, 국가보훈등록증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01조의2부터 제101조의4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.</u>
② (생략)	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제9조(의료지원) ① (생략)	제9조(의료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참전유공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진료비용을 감면받으려는 경우 <u>국가유공자증</u> 을 내보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<u>국가보훈등록증</u> ----- -----.
③ ~ ⑦ (생략)	③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고궁 등의 이용지원) ① (생략)	제12조(고궁 등의 이용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참전유공자가 제1항에 따라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시 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<u>국가유공자</u> <u>증을</u> 내보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국가보훈등</u> <u>록증</u> -----.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	
연 락 처	(044) 202 - 5442